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위원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또는 완화 등〉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2363호)
- 문정복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81호)

2024.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정부안】

1. 제 출 자 : 정부
2. 제출연월일 : 2024. 7. 26.
3. 회부연월일 : 2024. 7. 27.

【문정복의원안】

1. 발 의 자 : 문정복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13.
3. 회부연월일 : 2024. 8.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안】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문정복의원안】

현행법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는 분양가격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 경기 침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건설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학교용지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사업성을 악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혔으며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 요율과 100가구로 명시된 세대수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부과 요율 0.8%에서 0.4%로 낮추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여 주택공급 사업 및 정비사업 등에 용이하게 하고 학교신설이 필요한 지자체의 장에게 학교 신설 및 증축의 경비 일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여 지방교육청의 재정에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

Ⅲ. 검토의견

1.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및 운용 현황

가.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개요

현행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 확보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96년 1월 시행)」(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을 통해 부과되고 있음¹⁾.

부과 대상은 10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로²⁾³⁾, 공동주택 분양가의 0.8% 및 단독주택지 분양가의 1.4%를 부과하고 있음⁴⁾.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지. (생략)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단서 생략)

3) 종전에는 토지 또는 공동주택 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2005년 3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4)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1천분의 14

시·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⁵⁾, 학교용지 확보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⁶⁾.

한편,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등 일정한 개발사업분의 경우 부담금 부과·징수의 예외를 두고 있고⁷⁾,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청에 기부채납, 무상공급하거나,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⁸⁾.

5)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이 조에서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는 시·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2·3. (생략)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2~5. (생략)

6)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진출하여야 한다.

7)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다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나. 학교용지부담금 운용 현황

최근 5년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은 2조 1,922억원이며, 지출액은 1조 1,1407억원으로 특별회계 여유재원은 1조 515억원(이전년도 잔액 및 이자 포함시 1조 1,638억원)임.

< 최근 5년간 학교용지부담금 운용 현황 >

(’23년 결산기준, 단위 : 억원)

구분	’19	’20	’21	’22	’23	계
징수(A)	3,040	3,608	4,661	2,713	7,900	21,922
지출(B)	2,559	1,836	3,007	1,769	2,236	11,407
잔액 (A-B)	481	1,772	1,654	944	5,664	10,515 ⁹⁾

* 자료 : 교육부

「2023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¹⁰⁾」에 따르면 역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금액은 5조 6,245억원, 징수금액은 5조 3,913억원(징수율 95.9%)임.

지역별로는 2023년도 기준 경기도 692억원, 대전 233억원, 충남 207억원 순이었으며, 2022년도까지 누계 기준시 경기도 1조 8,924억원, 부산 4,034억원, 서울 3,929억원 순임.

8) 제5조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9) 이전년도 잔액(이자 포함)까지 포함하여 2023년 12월 31일 기준 학교용지부담금 잔액은 1조 1,638억원임

10) 기획재정부, 2024.5.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

(단위: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주1)}		징수율 (B/A)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합계	326,328	5,624,574	320,802	5,391,308	5,526	233,266	95.9
2023	7,658	247,455	7,900	221,988	△242	25,467	89.7
2022	6,797	303,134	6,501	271,253	296	31,881	89.5
2021	7,066	487,716	7,196	466,116	△130	21,600	95.6
2020	6,771	375,223	6,580	360,843	191	14,379	96.1
2019	4,718	301,456	4,921	304,041	△203	△2,585	100.9
2018	5,686	393,913	6,101	364,240	△415	29,673	92.5
2017	5,046	332,346	4,388	330,959	658	1,388	99.6
2016	9,538	433,969	9,544	434,859	△6	△890	100.2
2015	4,590	450,540	4,549	452,997	41	△2,456	100.5
2014이전	268,458	2,298,822	263,122	2,184,012	5,336	114,810	95.0

주) '23년 (서울) 소송패소로 환급액 증가, (부산, 대구, 인천등) 분양세대 증감 등으로 차이 발생

* 자료 : 기획재정부, 「2023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2024.5.

＜ 시도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

(단위: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2023년	2022년까지 누계
서울특별시	9,925	392,954
부산광역시	11,467	403,487
대구광역시	3,084	379,795
인천광역시	16,290	391,212
광주광역시	13,624	137,443
대전광역시	23,350	156,605
울산광역시	8,301	116,005
세종특별자치시	362	183,203
경기도	69,277	1,892,471
강원도	12,949	111,468
충청북도	1	97,693
충청남도	20,746	160,502
전라북도	6,792	124,069
전라남도	7,502	111,090
경상북도	6,537	151,543
경상남도	10,089	335,008
제주특별자치도	1,693	24,772
합 계	221,988	5,169,320

* 자료 : 기획재정부, 「2023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2024.5.

2. 입법 배경

가. 학령인구 변화와 학교 신증축 현황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초중고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3년도 기준 533만명이며,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향후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¹¹⁾

<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 >

(단위 : 천명)

연도	22	23	24	25	30	40	50	60	70
초등학생	2,701	2,607	2,485	2,344	1,607	1,565	1,530	1,233	934
중학생	1,368	1,364	1,384	1,403	1,154	679	826	706	501
고등학생	1,323	1,364	1,379	1,367	1,326	686	816	739	561
합계	5,392	5,335	5,248	5,114	4,087	2,930	3,172	2,678	1,996

* 자료 : 통계청(“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 2023.12., 중위추계 기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학교 신설 및 증축¹²⁾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학교 신설(개교) 현황을 살펴보면 총 658개교로 ‘15년 94개교에서 ‘23년 33개교 등 연도별로 증감을 하고 있으며, 학교 증축은 최근 5년간 329개교에 달하였음.

11) 연도별 학령인구 추계

12) 학교증축의 경우 현행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이 소요되지는 않음.

< 최근 10년간(2014~2023년) 학교 신설(개교) 현황 >

(단위: 개교)

연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합계
학교수	73	94	79	76	57	67	76	64	39	33	658

* 자료 : 교육부

< 최근 5년 학교 증축 현황 >

(단위: 개교)

연도	19	20	21	22	23	합계
학교수	55	45	78	81	70	329

* 자료 : 교육부

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

부담금은 반대급부없이 특정한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조세 외에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금전지급 의무로¹³⁾, 2022년말 기준 91개 22.4조원 규모로 운용 중임.

최근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2024.3.27.)¹⁴⁾ 을 통해 국민체감부담 완화, 기업 경제활동 촉진, 기타 여건변화, 실효성 미흡 등을 이유로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을 감면¹⁵⁾할 계획을 밝히고 있음.

13)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14) 기획재정부,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024. 3.

15) 12개 부담금 감면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24.7.1.부터 시행되었으며, 2개 부담금(개발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률 개정이 필요함.

이에 따르면 부담금의 수가 91개에서 69개로 축소되는데, 부담금 경감 규모는 연간 2.0조원 수준(폐지 0.5조원, 감면 1.5조원)으로 '24년 부담금 계획 9.6조원 대비 약 21% 수준임.

<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2024) >

既정비 부담금 16)	+	정비안(32개)			=	정비 부담금
		폐지	감면	경감 규모		
4개		18개	14개	2.0조원		36개

* 자료 : 기획재정부

이 중 학교용지부담금은 면제대상 확대, 부과요율 합리화 등 부담금 조정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¹⁷⁾, 해당 부담금 정비방안에 따르면 학교시설 수요가 감소함에도 분양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연 3,598억원)하여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분양가 인하 유도 등을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임.

16) 2024.1.16.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한 4개 부담금

17) 기획재정부, 「부담금제도 개선방안」, 2023, 5.

3. 검토의견

가. 학교용지부담금의 폐지 또는 경감(정부안 제1조부터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9조, 제11조 및 문정복의원안 제2조, 제5조, 제5조의2)

정부안은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함에 따라 동 법의 목적, 정의, 학교용지의 확보등의 내용을 변경하고, 부담금의 부과·징수,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담금등의 강제징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과태료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정부안 제1조부터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9조, 제11조, 문정복의원안 제2조, 제5조, 제5조의2).

< 의안별 개요 >

	현 행	정부안	문정복의원안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요율) ① 공동주택 0.8% ②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1.4% -(부과대상) 100세대 이상	폐지	경감 -(부과요율) 공동주택 0.8%→0.4% -(부과대상) 1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면제대상) 3년이상 취학인구 감소(임의적→필요적 면제)

< 정부안 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u>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u>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조성</u> <u>및 개발</u>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 300세대(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 -----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다

③ —————
———. 이 경우 교육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④·⑤ (현행과 같음)
<삭 제>

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 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② 공동주택분양자등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납부방법·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해당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천분의 14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① 시·도지사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이 조에서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는 시·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2.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가산금
3.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2.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4.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하거나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① 시·도지사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1조(과태료) ①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문정복의원안은 학교용지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부과율을 0.8%에서 0.4%로 낮추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며, 취학인구 감소로 학교신설 수요가 없는 경우 부담금을 필요적으로 면제하도록 함(문정복의원안 제2조, 제5조, 제5조의2).

< 문정복의원안 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u>100세대</u>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 ----- ----- <u>300세대</u> ----- ----- ----- ----- -----.
가. ~ 지. (생략)	가. ~ 지.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 ④ (생략)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u>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u>	⑤ ----- ----- -면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2. <u>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u>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⑥ (생략)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주택: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1천분의 14	1. (현행과 같음) 2. 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출한 시점 이전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학교의 신설 수요에 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4.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2. (현행과 같음)
---	--

개정안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폐지 또는 경감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부담과 필요성(회계적으로는 부담금 부과·징수와 지출)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부담금 부담(부과·징수)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주택 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 시행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러한 부담금이 폐지될 경우 개발사업 시행의 부담이 완화되고 분양가 인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기대할 수 있음¹⁸⁾.

다만, 이러한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실질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산정과정 등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 명확한 입증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⁹⁾.

부담금 필요성(지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 신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데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학교신설 수요가 그에 명확하게 비례하여 감소하고 있지는 않음.

구체적으로 학생수는 2017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감소하였으나(연평균 1.7%), 학교수는 소폭 증가(0.5%)하였고, 최근 10년간 658개(연간 평균 60여개)의 학교가 신설(개교일 기준)되는 등 여전히 신설 수요가 있는

18)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의 입장문에 따르면,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경기 침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건설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및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민간 주택공급 저해요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히고 있음.

19) 분양가 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부담금만큼을 분양가에 전가하지 않는지 여부), 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수분양자인 국민의 부담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완화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상황임²⁰⁾.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의 폐지 또는 완화 여부는 이러한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담 및 필요성 측면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²¹⁾.

다만,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담 정도는 사회변화에 따라 유동적이었음.

①부과요율(공동주택 기준)은 0.8%에서 2005년 0.4%로 완화되었다가 2009년 0.8%로 다시 이상되었고 ②부과대상 세대수도 당초 300세대 이상에서 2005년 100세대 이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음.

20) < 최근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추이 >

(단위: 만명, 교, 학급,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학생 수	583	570	556	544	535	532	527	△1.7
학교 수	16,213	16,357	16,380	16,478	16,611	16,636	16,749	0.5

주) 교육재정교부금 지원 기준

자료: 교육부

21) 최근 5년간 학교용지 매입경비(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사업 외의 경우도 포함) 중 학교용지부담금의 비율은 25% 수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또는 경감)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른 재원(주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5년간 시도별 학교용지 매입경비 중 학교용지부담금 비율 >

(단위 : 억원, %)

구분	무상공급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	교육청재원	계
금액	19,784	9,260	4,583	2,769	36,396
(비율)	54.4	25.4	12.6	7.6	100.0

* 자료 : 교육부

< 부담금 산정기준 연혁 >

구분		제정 (1996.1.29.)	2000.1.28.	2005.3.24	2009.5.28.~ 현행
부 과 요 율	공동주택	—	1천분의 8	1천분의 4	1천분의 8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1천분의 15	1천분의 7	1천분의 14
세대수		300세대	300세대	100세대	100세대
부과대상		분양받는 자	분양받는 자	분양하는 자 ²²⁾ (개발사업시행자)	분양하는 자 (개발사업시행자)
비 고			부과요율 기준 신설	국민부담 경감 사유	학교용지 매입 비용 충당 개발사업시행자 책임 강화

주1) 부과요율은 분양가격 대비 비율임

자료 : 법령정보시스템 및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이상과 같이 2005년에 부과대상 세대수를 확대, 2009년에 부과요율을 인상한 이후 상당기간 부담금 산정기준이 유지되어 왔고, 학교신설 수요 등도 상대적으로 변화된 사회적 상황 등에 비추어, 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부담의 정도, 학교용지 매입비용 충당, 개발사업시행자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문정복의원안의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부과요율만 현행의 50% 수준으로 경감하고 있는데, 종래 개정연혁에 따르면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에 대한 부과요율도 상응하여 각각 1.5%(00년)에서 0.7%(05년), 1.4%(09년)으로 동일한 비율로 증감을 하였다는 점에서 이도 상응하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²³⁾.

22) 당초 특별법 시행시(96년) 분양받는자로 규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2005년에 분양하는 자(개발사업시행자)로 부담금 부과대상이 변경되었음.

23)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대부분은 공동주택이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는 극히 일부임.

나. 학교용지 확보 및 증축의 경우 경비 부담(정부안 제4조, 제6조 및 문정복의원안 제6조)

개정안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또는 경감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등의 경우 경비 부담을 변경하고 있음.

정부안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소요경비는 전액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변경됨(안 제4조 및 제6조).

반면, 문정복의원안에 따르면 학교용지 확보의 경우 현행과 같고, 증축의 경우에도 확보와 같이 시도 일반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1/2을 부담하도록 변경하도록 함(안 제6조).

< 의안별 개요 >

	현 행	정부안	문정복의원안
학교용지 확보시 비용부담	시도 일반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2 +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1/2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현행과 같음
학교 증축시 비용부담	‘증축’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부담 가능	-	확보와 동일하게 규정 (시도 일반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2 +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1/2)

< 정부안 및 문정복의원안 조문대비표 >

현행	정부안	문정복의원안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경비는 <u>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u>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⑥ ~ ⑧ (생략) 제6조(시·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생략) ② <u>시·도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증축 경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u>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등)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_____ ----- <u>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u> <삭 제> ⑥ ~ ⑧(현행과 같음) <삭 제>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 ⑧(현행과 같음) 제6조(시·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4조제1항</u>----- ----- ----- ----- <u>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후단 삭제></u>

<신 설>	<신 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도교육감의 진출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내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진출하여야 한다.
-------	-------	---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가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 일반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1/2,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2을 부담하도록 함(시·도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절반).

시·도가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기 위한 재원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이 있으며²⁴⁾,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학교용지 매입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함.

단, 실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운용현황을 보면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거의 없고 대부분 학교용지부담금을 그 수입으로 운용되고 있음²⁵⁾.

24) 실제로는 시도 일반회계에서는 부담하지 않고 대부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함

25)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운용현황 (단위 : 억원)

	21년	22년	23년
계	4,763	2,906	2,229
학교용지부담금	4,706	2,906	2,229
일반회계전입금	56		

정부안은 이러한 운용실태를 반영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할 경우 시·도가 학교용지 확보에 드는 경비의 1/2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반면, 문정복의원안은 학교용지부담금을 경감하면서, 학교용지 확보시 경비부담은 현행과 같이 유지함.

또한, 학교용지법은 예외적으로 ‘학교용지의 확보’ 외에 ‘기존 학교의 증축’에 대해서 부담금의 사용용도를 넓히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기존학교 증축비를 지원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임²⁶⁾.

이는 학교용지의 확보와 달리 증축에 대해서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간의 경비 분담비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²⁷⁾, 학교용지특별회계의 운영권자인 시도지사와 교육감간 협의가 실제로 용이하지 않음에 따른 것임.

이에 문정복의원안은 ‘기존 학교의 증축’에 대해서도 현행 학교용지 확보와 같이 시·도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여

26) 2005년, 증축에 대해서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용지법이 개정되었으나, '23.3.15.에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에서 120억원을 확보해 11개 시·군 기존 학교 16곳에 증축 공사비용을 지원한 것이 학교용지 부담금특별회계에서 기존 학교 증축비를 지원한 첫 사례임.

27)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제6조(시·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생략)

② 시·도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증축 경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학교 증축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최근 5년간 학교증축 현황 및 소요 비용(전체 학교증축 비용으로 개발사업을 전제로 하는 경우는 이 중 일부임)을 살펴보면, 329개교를 증축하는데 약 3조원이 소요되었으며 대부분(2조 4,410억원)을 교육청에서 부담하였고 일반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음.

< 최근 5년간 학교증축 현황 및 소요 예산 >

(단위 : 개교, 억원)

연도	증축학교	소요 예산				
		교육청	사업자	국고	지방비	합계
19	55	2,867	734			3,656
20	45	2,619	774		134	3,438
21	78	7,353	823		103	8,254
22	81	6,053	939	273		7,346
23	70	5,518	1,778			7,366
합계	329	24,410	5,048	273	237	30,060

주 : 개발사업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 전체 학교증축 소요 예산임

자료 : 교육부

학교용지법에서 학교용지 확보 외에 기존 학교의 증축에 대해서도 부담금 사용용도를 넓히고 있음에도 분담비율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지출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문정복의원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특히, 학교 신설뿐 아니라 증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학교 용지부담금 부과·징수가 지출보다 많아 잔액이 발생²⁸⁾하고 있음에도 증축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음.

다. 부칙(정부안 부칙 제1조에서 제5조, 문정복의원안)

구분	부 칙
정부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용지 확보 관련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자금 등으로 구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며, 부칙 제4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채무를 학교용지확보기금이 승계한 경우에는 학교용지확보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잔액이 소진되기 전까지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잔액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다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잔액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협의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제3조(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분양공고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된 개발사업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28) 최근 5년간 1조 515억원

문정복 의원안	기본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자금 등으로 구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채무는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날에 교육감이 설치·운용하는 학교용지확보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다만,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종전의 제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정부안은 현행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함에 따라 기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잔액을 학교용지 확보관련 경비부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경과조치(①개정법 시행전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에 대해서 부과·징수 등 경과조치 ②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승계한 학교용지확보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③개정법 시행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²⁹⁾.

문정복의원안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완화함에 따라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부과요율 및 세대수 등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례 등을 두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29) 또한, 정부안에 따르면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함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출	제출일	소관 상임위원회	주요 내용
부담금관리기본법 (2373)	정부	2024.7.30	기획재정위원회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임(별표)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라. 관계부처 및 기관 의견

개정안과 관련하여 시·도 교육청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법률안 개정은 신중히 검토(또는 일부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시·도교육청 의견]

○ 교육부 : 정부안 찬성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신설 수요도 감소하는 반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금을 지속 부과하고 있어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이 약화되는 실정으로,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분양받는 국민에게 부담금의 전가될 수 있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필요 - 2030년 개교 예정 학교까지 기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여유재원(23년말 기준 1.2조원)을 활용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부담금 폐지후에는 학교용지 확보소요 부족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시 반영할 예정임
○ 대구, 인천, 경기, 충남, 전북 교육청 - 학교 신설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부담금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일괄 폐지보다는 합리적인 개편을 통해 부담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교육재정 악화 등에 대비하여 학교 신·증설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서울, 부산, 광주, 세종, 경남 교육청 - 학령인구 감소에도 학교 신증축 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며,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 이익에 따른 원인자부담 성격으로 현행과 같이 유지됨이 타당함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시 지방교육재정 부담 증가로 교육투자가 악화될 수 있으며, 적시에 필요한 시설확충이 되지 못할 경우 학생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으므로 현행 유지 필요
○ 시·도 일반자치단체 - (울산) 학교용지 조성·개발 비용을 시도지사에게 부담하게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 - (인천, 경기, 전북, 경남) 시·도지사와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 협의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92

참고자료 1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

□ (정비대상) 91개 부담금 중 총 32개

* 既정비(1.16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제출) 추진 중인 4개 부담금 포함시 36개

부처	폐지(18개)	감면(14개)
기재부	■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
교육부	■ 학교용지부담금	-
외교부	■ 출국납부금	■ 국제교류기여금
행안부	■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부담금	-
문체부	■ 영화상영권 입장권 부과금 ■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 ■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 출국납부금
산업부	■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농식품부	-	■ 농지보전부담금
환경부	■ 수질개선부담금 ■ 수익자부담금(댐건설법)	■ 폐기물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 폐기물처분부담금
고용부	-	■ 장애인 고용부담금
국토부	■ 원인자부담금 ■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 시설부담금(산업단지) ■ 시설부담금(물류단지)	■ 개발부담금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부담금
해수부	■ 수산자원조성금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 방제부담금
산림청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7.23.)

□ 부담금별 정비안

구분	기준	비고
국민 체감 부담 완화	국민들이 그간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인하 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 폐지·감면	8개 부담금
기업 경제활동 촉진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요금·가격 등을 통해 국민에 부담이 전가되는 부담금 폐지·감면	11개 부담금
기타 여건 변화, 실효성 미흡 등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인한 정책목적 달성, 부과 실효성·실효성 미흡 등으로 부과 타당성이 낮은 부담금	8개 부담금

< 국민 체감 부담 완화 >

부담금명 (‘24년 계획)	정비방안	경감액(억원) (연간 환산*)	기대효과
산업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32,028억원)	단계적 요율 인하 (3.7→ ¹ 년차3.2→ ² 년차2.7%)	¹ 년차 △4,328 ² 년차 △8,656	연 62만원(뿌리업종), 8,000원(4인 가구) 경감
외교부 출국납부금(410억원)	폐지	△410	출국당 30,000원 경감
문체부 출국납부금(4,006억원)	납부액 인하(1→0.7만원) 및 면제대상 확대(2→12세 미만)	△1,344	(12세 미만 자녀 2명이 있는 부부)
문체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294억원)	폐지	△294	영화 1회 관람시 약 500원 경감 (관람료 15,000원 기준)
외교부 국제교류기여금(696억원)	복수여권(△3천원) 단수·여행증명서(면제)	△145	복수여권 발급시 3,000원 경감
산업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17,524억원)	1년 한시 LNG 부담금 30% 수준 인하	△1,516	연 6,160원 경감 (4인 가구, ‘23년 월평균 도시가스 사용량 기준)
국토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348억원)	3년 한시 부과요율 50% 인하	△174	연 600원 경감 (차량 1대 기준)
해수부 수산자원조성금(8억원)	폐지	△8	영세 어민 부담 완화

< 기업 경제활동 촉진 >

부담금명 (‘24년 계획)	정비방안	경감액(억원) (연간 환산*)	기대효과
교육부 학교용지부담금 (3,598억원)	폐지	△3,598	건설경기 활성화 및 분양가 인하 유도
국토부 개발부담금 (4,756억원)	‘24년 한시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3,082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1,516억원)	영세 자영업자 소유 경유차 50% 인하	△133	부담 형평성을 감안하여 영세 기업의 부담 완화
환경부 폐기물처분부담금 (1,561억원)	중소기업 감면기준 매출액 확대(600→1,000억원)	△11	
산업부 특정물질 제조·수입부담금 (21억원)	제2종 특정물질 (HFC 가스) 요율 인하 (0.00074→0.0005%)	△6	
해수부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53억원)	폐지	△53	
농식품부 농지보전부담금 (13,773억원)	非 농업진흥지역 부과요율 인하 (개별공시지가 30→20%)	△3,540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뒷받침
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286억원)	면제대상 확대 등 (국가산단, 물류단지 등)	△155	
고용부 장애인고용부담금 (8,437억원)	연계고용 감면 한도 상향 (납부액의 60→90%), 표준사업장 규제 완화 (지주회사 계열사, 의료업 등)	△529	기타 정책목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업 부담 완화
환경부 폐기물부담금 (2,003억원)	부과대상에서 껌 제외	△31	
해수부 방제분담금 (293억원)	부과요율 인하(내항선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	△31	

* ‘24년 징수계획을 기준으로 정비에 따른 경감액을 연 단위로 환산한 금액

< 기타 여건 변화, 실효성 미흡 등 >

부담금명 (‘24년 계획)	경감액(억원) (연간 환산*)	폐지 사유
기재부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153억원)	△153	당초 부담금 부과목적 달성
환경부 수질개선부담금(158억원)	△63	지하수이용부담금과 부과목적·사용용도가 유사 * 지자체 수입분(60%)은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
산업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2,400억원)	-	부담금 성격 미부합 * 민간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징수
문체부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29억원)	△29	부담금 성격 미부합
문체부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	
국토부 도로법 원인자부담금(20백만원)	△0.2	부과실적 미흡, 부과 실효성 낮음
국토부 시설부담금(산업단지)(89백만원)	△0.9	
국토부 시설부담금(물류단지)(-)	-	
국토부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44백만원)	△0.4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부담금(7백만원)	△0.1	
해수부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부과실적 없음
환경부 댐건설법 수익자부담금(-)	-	
산업부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	

* ‘24년 징수계획을 기준으로 정비에 따른 경감액을 연 단위로 환산한 금액